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2026.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26일, 어기구의원 등 11인 제출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4.9.)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4.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4.03.)

2. 제안설명의 요지

(어기구의원)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 해빙이 녹기 시작하며, 그간 선박통항이 불가능했던 북극항로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개발·이용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 교역로인 말라카 해협과 대만 해협의 통항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극항로를 이용하고, 상업 항로화할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특히, 북극항로 연안국인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캐나다 등의 강대국은 이미 북극항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국가전략을 발표하는 등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각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우리나라는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운항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북극항로 이용 및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북극항로 진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과학 연구, 국제협력 및 해운·물류 관점에 한정된 정책 추진으로,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삼기에는 일부 미비했던 측면이 있음.

이에 해빙면적 감소에 따른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기회를 선점하고 북극항로 활용을 확대함에 따라 촉진되는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

고,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
함과 동시에 북극항로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체
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없음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4.03.)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